

## 2026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기획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농산업 분야 우수 기술의 후속 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 □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농식품 우수·융복합기술 창업활성화지원	○ 미국 SBIR 방식을 적용하여 기술실현 가능성 검증(1단계), 제품 개발 및 상용화(2단계)로 세분화하여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 유도

## 2

##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26년 정부출연금 5억 원 이내, 6개 과제

- 과제당 정부출연금 83.3백만원, 연구기간 9개월

내역 사업	지원유형 (자유응모)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농식품 우수·융복합기술 창업활성화지원	(유형1) 첨단바이오 적용기술	4	83.3백만원 (과제 당)
	(유형2) 농업 안전 예방·보호 기술	2	
합 계		6	500백만원

※ 잔여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개 과제에 배분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28.(수), 31일간

- 접수기간 : 2026. 1. 5.(월) ~ 2026. 1. 28.(수) 16:00:00 까지

### 3

## 공고사항

#### □ 지원분야: (유형1) 첨단바이오 적용기술 / (유형2) 농업인 안전 예방·보호 기술

내역 사업명	구분	내용
농식품 우수· 융복합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첨단바이오 적용 기술	•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의 농업생명자원(동식물· 미생물) 고부가가치 전환기술 및 활용 기술
	농업인 안전 예방·보호기술	•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보호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 □ 지원 대상

내역 사업	지원 대상
농식품 우수· 융복합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농업 회사·영농조합 포함)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연구 * 특히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보유 특허 필수</li> <li>○ 사업화할 주체인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되 해당 기업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된 농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으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li> <li>② 다른 기관·기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아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li> </ul> </li> <li>* 사업화할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출연연이나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업 등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li> </ul>

#### □ 사업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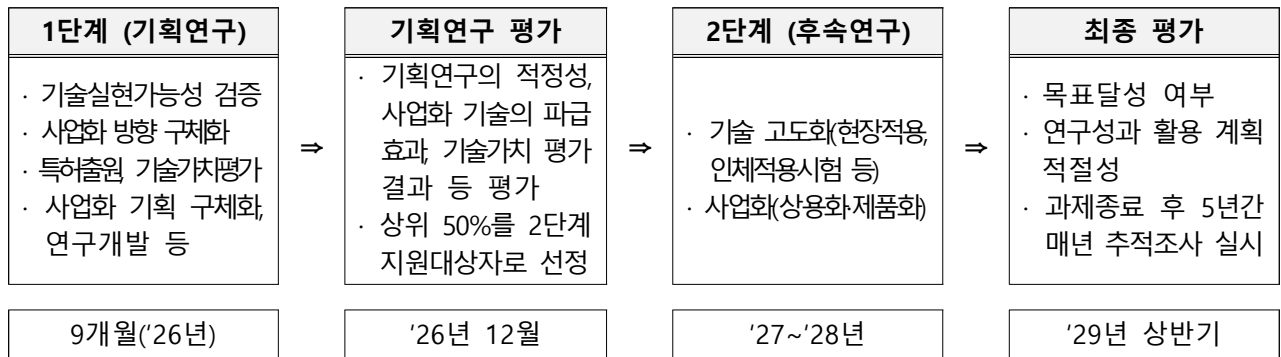
- 농식품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  
하고, 평가 후 검증된 기술을 제품화 등 사업화 단계까지 개발 지원
- 본 공고는 1단계(기획연구) 지원
  - 1단계 기획연구를 평가하여 분야별 평가 결과, 상위 50% 과제에 대해  
2단계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 ※ 1단계 종료시점 최종·2단계 선정 평가 진행
  - 기획연구 과정 후,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팀(공동, 위탁)을 기획연구  
과정에서 확정하고 기획연구 최종보고서에 제시

구분	1단계 기획연구('26)
지원기간	9개월 이내
사업목표/ 내용	기 연구된 기술의 사업화 실현가능성 검증 및 기획연구 지원 (기술가치평가, 특허출원, 사업화 기획 구체화, 연구개발 등)
지원규모	과제별 83.3백만원 이내
선정범위	총 6개 과제(2개 유형)
기술료	해당없음



구분	2단계 연구('27~'28)
지원기간	2년 이내
사업목표/ 내용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장적용 및 사업화 등 심화연구 수행 (기술 고도화+상용화, 제품화)
지원규모	과제별 총 6억 원 이내 (연 3억 원)
선정범위	총 3개 과제(2개 유형)
기술료	징수

### □ 연구수행 체계



### □ 연구기간 내 핵심성과 및 전략성과

구분	필수 핵심성과 및 전략 성과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과제별 특허* 출원 필수</li> <li>* 유형별 지원분야의 기술 개발로 연구기간 내 1건 이상 특허출원(기여율 100%)</li> <li>○ 1건 이상의 기술가치평가* 의뢰 결과를 1단계 보고서 첨부 必</li> <li>* 기술가치 평가 의뢰기관: 기술이전 촉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li> <li>* 기술가치평가기관을 통해 보유 기술이 2단계 연구개발 종료 후('29년 이후) 5년간 <b>매출 총합이 3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함 (2단계 후속연구 진행을 위한 중요 평가요소)</b></li> <li>○ 2단계 후속연구 진행(상용화)을 위한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화방향(판매전략 및 마케팅 등), 실제 제품화를 위한 방안 포함 (2단계 연구계획서 내 기재 必)</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화 1건 이상, 연구기간 내 매출액 5천만 원 이상</li> <li>○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 중 연구기간 내 각 제품별 매출액 제시 必</li> </ul>

- 그 외 세부 핵심성과(사업화, 기술료, 정책제안, 고용창출 등) 및 전략성과는 신청기관이 제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관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연구자로서 최대 5개로 제한)는 적용하지 않음(개념연구 및 선행 1단계 연구과제에 한정, 2단계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3책 5공 적용)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5

## 신청방법 및 절차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 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3 서식(별첨서류 포함)
  -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주의 사항 >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 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9개월간의 연구비를 배정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 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3월 1일)
- 후속연구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원 이상/100백만원×100%=25%)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붙임2 연구개발 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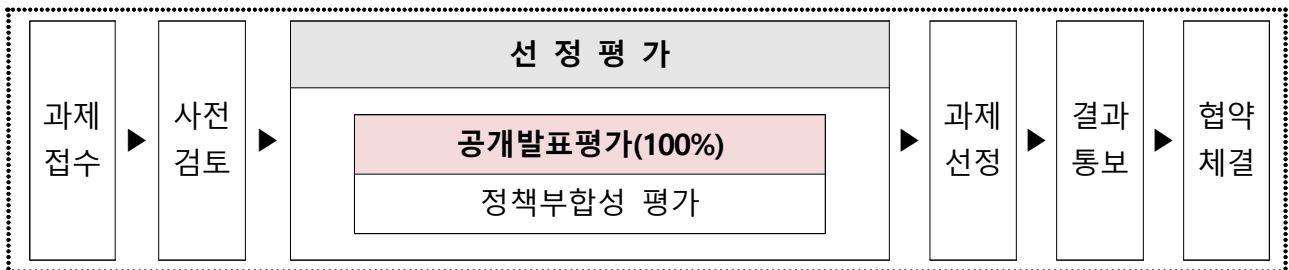
## 6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 제2장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 선정 절차



-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공개발표평가서 준용)
    -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 지침 내 별지 1의 2 '기획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며 붙임의 「제출서류 서식」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자유응모 과제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 등 기술성, 사업화 계획, 시장진입 가능성 등 사업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10호, 제11호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 가점적용은 주관기관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기술료의 경우 농기평으로 공문으로 보고 및 IRIS에 등록된 성과만 인정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 협약

- 1차적으로 9개월 협약하고, 종료 시 평가를 통해 2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기획연구)	2단계(후속연구)
2년 9개월	9개월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 1단계 종료 후, 최종 평가 및 2단계 선정 평가 방법

- 기술사업화평가지침 제 13조 6항~8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26년에는 차년도 후속연구 추진을 위해 발표평가 100%")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 지침>

#### 제13조(최종평가)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후속과제 지원을 위한 평가를 위해 협약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리기준 별지 17의 최종보고서 초안과 함께 별지 제3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되,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각각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며 평가단은 서면평가 시 별지 6의2, 발표평가 시 별지 6의3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기획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는 기획연구 후속 과제 선정 결과로 같음하며, 운영규정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 등
- 1단계 연구('26), 2단계 연구('27~)의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의 기획연구 과제 관련 사항」에 따름

##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연구비 점검 강화 안내

- 연구비 교육은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의무화로 단계평가에 반영되며, 연구비 상시점검 보완 미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

##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농생명 사업실	061-338-9774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붙임 2> 선정평가 평가서 서식

(참고 1) N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b>기획연구계획서</b>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중앙행정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외 지원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에는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에는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해당시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농림식품 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 5~9단계 종료시점 : 7~9단계)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기획과제 연구개발사업화 목표 및 내용	목표								
	내용								
후속과제 연구개발사업화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연구과제 선정 후 해당시 작성)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제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험규모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연구내용(1~5번)은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를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기획 연구개발 / 사업화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전망 등을 기술하고, 기획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대상 기술의 기술·시장성

\* 기술의 개요, 기술의 핵심내용 및 혁신성, 기술수준 및 경쟁력,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국내외 개발기술 동향, 국내외 경쟁 기술 및 대체 기술 동향 등

### 3. 기획 연구개발 / 사업화의 목표 및 내용

\* 기획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획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할 후속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을 기술

#### 1) 과제의 최종 사업화 목표 및 주요 내용

목표	
주요 내용	

#### 2) 기획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목표	
주요 내용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시전 (이전)		사업화				기술인력	학술성과			교역지수	인력양성	정책 활용		기타 (타연구활용예외)	
	특허출원	특허등록	소프트웨어	SMART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SCI	논문 비SCI			논문 평점	학술발표		정채활용
단위	건	건	건	평년건수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기획연구																				
후속연구 (1년차)																				
후속연구 (n년차)																				

\* 기획 연구과제 수행 종료 시점의 성과목표와 후속연구 추진 시 예상되는 성과목표 제시

\*\* 타 기술 이전받은 경우, 기획연구기간 내 후속 성과 창출 필수(농기평 지원 사사표기 및 기여율 50% 이상 必)

#### 4. 기획 연구개발 / 사업화의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

-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화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사업화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하려는 과제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5. 기획 연구개발 후 성과의 사업화 계획 및 추진전략

---

- \* 기획 연구개발 성과의 후속 연구 활용 전략 등 제시
- \*\* 개발 완료 및 제품화 시기,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후속 연구기간 내 가시적 성과 도출되어야 함)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등 내용 포함 가능

## 6.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 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연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sup>1)</sup>	사업화 형태 <sup>2)</sup>	지역 <sup>3)</sup>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24쪽 중 14쪽)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24쪽 중 15쪽)

## 7.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 계	연 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sup>1)</sup>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sup>5)</sup>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sup>6)</sup>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sup>1)</sup>	특례 <sup>2)</sup>	일반 <sup>3)</sup>	특례 <sup>4)</sup>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24쪽 중 16쪽)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sup>5)</sup>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sup>6)</sup>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sup>5)</sup>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sup>6)</sup>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sup>5)</sup>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sup>6)</sup>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질지(80g/m<sup>2</sup>)]

(24쪽 중 17쪽)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sup>5)</sup>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sup>6)</sup>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up>1)</sup> )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sup>2)</sup>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별첨 서식> 공통 제출자료

-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4)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최근 5년, 기관별 작성)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p><b>&lt;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gt;</b></p> <p>√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p>		
<p><b>&lt;과제의 중복성&gt;</b></p> <p>√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p> <p style="padding-left: 20px;">단,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응용·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p>		
<p><b>&lt;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gt;</b></p> <p>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p>		
<p>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p>		

[별첨 1]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제재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직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 1.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 나.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_\_\_\_\_

신청년도 \_\_\_\_\_

연구과제명 \_\_\_\_\_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법인명 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small>(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small>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small>(해당란에 “○” 표시)</small>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small>(단위 : 백만원)</small>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기관부 담연구개발비 금액 <small>(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small>	적용환율 <small>(외자일 경우)</small>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small>(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small>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small>(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small>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small>(해당란에 “○” 표시)</small>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b>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속부서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I. 사업 개요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개발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 구개발비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4							
5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4							
5							

[별첨 4]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II.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작성 요망
-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 4]

## [별첨-0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00”에서 별첨번호 00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 시설장비 분류

<b>분류1(기술분야)</b>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b>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b>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분류3(사용용도)</b>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b>분류4(중점투자분야)</b>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b>분류5(활용목적)</b>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b>예비타당성조사 여부</b>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b>사전기획 여부</b>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b>수요조사 여부</b>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b>심의일자</b>	YYYY-MM-DD	<b>심의결과</b> (인정/조건부인정/불인 정)	
-------------	------------	-----------------------------------	--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별첨 4]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 <sup>1)</sup>	렌 탈 <sup>2)</sup>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금액	”00년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항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별첨 4]

##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 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p>사업(연구) 부합성</p>	<p>○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p>
<p>국가전략 적 필요성</p>	<p>○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amp;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p>
<p>연구장비의 중복성</p>	<p>○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p>
<p>연구장비의 활용성</p>	<p>○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p>
<p>연구장비의 적정성</p>	<p>○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p>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p>○</p> <p>-</p> <p>※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 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p> <p>-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p> <p>-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p> <p>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p> <p>-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p> <p>※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서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p> <p>※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p> <p>※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p>					

<b>기업참여의사 확인서</b>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p>○○○○(참여기업명)은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산업화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기업의 장:(기관명)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b> 귀하</p>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세부사업명	○○○○기술개발사업	신청가점	총00점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가점 적용 내용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가점	신청
1	소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평균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접수마감일)	2년	5점	<input type="checkbox"/>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3	소관 연구개발과제로써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4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연구책임자(최근 3년 이내 기술료 징수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인증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7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핵심성과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한 연구기관이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지정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8	그 밖에 장관이 신규과제 선정시 우대가 필요하다고 공고에서 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근거	예시) · 농기평 ○○○○실-000(2020.00.00.): 최종평가(매우우수) [5점] · 농기평 ○○○○실-000(2020.00.00.): 과학기술대상(대통령표창) [3점]				
<p>「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 증빙서류 0부</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b> 귀하</p>					

[별첨 7]

## 별첨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최근 5년 기관별 작성)

1 기관명 :

2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구분	년도	연구개발인력(명)	수행 과제 수(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천원)
1				
2				

3 수행과제 성과\* 현황(필요시 추가 하여 작성, 3연도별 수행과제 수와 일치)

년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비 (천원)	주요 성과*						
				특허 등록	기술실시(이전)		매출액 (백만원)	논문		기타 그 외
					건	금액 (천원)		SCI	비SCI	

\* IRIS 성과시스템에 등록된 성과기준 작성

4 기업 재무현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작성)

년도	총 종업원수 (명)	기업유형 /형태	기업규모 (중소 중견 대)	업종	기업 신용등 급	부채 비율 (%)	자본 잠식률 (%)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금 (백만원)
ex) 2023	32	일반법인/ 주식회사	중소	산업용 냉장동 장비 제조업	b+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x100, 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서명)

[별지 4의2]

## 기획연구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지 표	가중치 (A)	배 점 (B)	소계 (A×B)	
기술성 검토 (40점)	기술개발 필요성	1-1 기술인력, 전담조직 유무 및 과제책임자 역량 등 개발인프라	1	0 1 2 3 4 5 └─┬─┬─┬─┬─┬─┘	
		1-2 기술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 보유 실적 등	1	0 1 2 3 4 5 └─┬─┬─┬─┬─┬─┘	
		1-3 기술개발 목표와 수준의 적정성 및 기술수명주기상 위치	1	0 1 2 3 4 5 └─┬─┬─┬─┬─┬─┘	
		1-4 기술의 차별성 및 창의성, 특허 및 권리 확보의 가능성	2	0 1 2 3 4 5 └─┬─┬─┬─┬─┬─┘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2-1 기술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과 추진 체계의 적정성	1	0 1 2 3 4 5 └─┬─┬─┬─┬─┬─┘	
		2-2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과 기술적 파급 효과	2	0 1 2 3 4 5 └─┬─┬─┬─┬─┬─┘	
사업성 검토 (60점)	사업화계획	3-1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4	0 1 2 3 4 5 └─┬─┬─┬─┬─┬─┘	
	사업화가능성	4-1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사업화 용이성 및 가능성)	3	0 1 2 3 4 5 └─┬─┬─┬─┬─┬─┘	
	시장진입	5-1 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4	0 1 2 3 4 5 └─┬─┬─┬─┬─┬─┘	
	운영역량	6-1 경영진 및 경영자의 역량	1	0 1 2 3 4 5 └─┬─┬─┬─┬─┬─┘	
<b>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b>				<b>점</b>	

## 2. 평가 의견

### 1) 우수한 점

--

### 2) 미흡한 점

--

### 3) 보완할 점

--

## 3. 보안등급 분류

### 3-1. 보안등급분류

연구책임자 신청 시 보안등급		연구과제평가단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제
--------------------	--	------------------	-------------------------------------------------------------

### 3-2. 보안등급 검토의견

--

## 기획연구과제 최종평가서(서면)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과제책임자	
평 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종합점수

기획연구의 충실성 평가점수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 1. 기획연구의 충실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가중치 (A)	점수 (B)	A×B
기획연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연구 방법과 전략의 적절성, 체계성</li> <li>◦ 도출된 사업화 전략의 타월성</li> </ul>	3	0 1 2 3 4 5 └───┬───┬───┬───┬───┘	
기술가치평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등 사전조사의 충족성</li> <li>◦ 기술가치평가 근거의 객관성, 합리성, 우수성</li> </ul>	2	0 1 2 3 4 5 └───┬───┬───┬───┬───┘	
기획연구의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기획연구 결과의 반영 정도</li> <li>◦ 사업계획에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li> </ul>	3	0 1 2 3 4 5 └───┬───┬───┬───┬───┘	
평가총점(A×B의 합계, 40점 만점) :				점

### 2. 기획연구 수행에 대한 검토의견

3.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 의견

4.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가중치 (A)	점수 (B)	A×B
사업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전략과의 부합성</li> <li>기술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li> <li>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과 기술적 파급효과</li> </ul>	2	0 1 2 3 4 5 └───┬───┬───┬───┬───┘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차별 매출액 등 제시한 목표의 구체성</li> <li>제시한 성과목표의 도전성, 도달 가능성</li> </ul>	2	0 1 2 3 4 5 └───┬───┬───┬───┬───┘	
사업화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화의 용이성, 제품생산 가능성</li> <li>연구기간 내 제품화 및 사업화 가능성</li> <li>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li> <li>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 경제성</li> </ul>	5	0 1 2 3 4 5 └───┬───┬───┬───┬───┘	
사업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인력, 전담조직 및 과제책임자 역량 등 개발인프라</li> <li>기업 재무현황과 성장 가능성 등 기업의 사업화 역량</li> </ul>	3	0 1 2 3 4 5 └───┬───┬───┬───┬───┘	
평가총점(A×B의 합계, 60점 만점) :				점

5. 연구과제 후속지원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6. 후속지원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기획연구과제 최종평가서(발표평가)

사업명			
과제번호		평가일	20 . .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과제책임자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종합점수

기획연구의 충실성 평가점수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 1. 기획연구의 충실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가중치 (A)	점수 (B)	A×B
기획연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연구 방법과 전략의 적절성, 체계성</li> <li>◦ 도출된 사업화 전략의 타월성</li> </ul>	3	0 1 2 3 4 5 └───┬───┬───┬───┬───┘	
기술가치평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등 사전조사의 충족성</li> <li>◦ 기술가치평가 근거의 객관성, 합리성, 우수성</li> </ul>	2	0 1 2 3 4 5 └───┬───┬───┬───┬───┘	
기획연구의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기획연구 결과의 반영 정도</li> <li>◦ 사업계획에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li> </ul>	3	0 1 2 3 4 5 └───┬───┬───┬───┬───┘	
평가총점(A×B의 합계, 40점 만점) :				점

### 2. 기획연구 수행에 대한 검토의견

### 3.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 의견

#### 4.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가중치 (A)	점수 (B)	A×B
사업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전략과의 부합성</li> <li>기술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li> <li>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과 기술적 파급효과</li> </ul>	2	0 1 2 3 4 5 └───┬───┬───┬───┬───┘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차별 매출액 등 제시한 목표의 구체성</li> <li>제시한 성과목표의 도전성, 도달 가능성</li> </ul>	2	0 1 2 3 4 5 └───┬───┬───┬───┬───┘	
사업화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화의 용이성, 제품생산 가능성</li> <li>제품화 및 사업화 가능성</li> <li>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li> <li>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 경제성</li> </ul>	5	0 1 2 3 4 5 └───┬───┬───┬───┬───┘	
사업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인력, 전담조직 및 과제책임자 역량 등 개발인프라</li> <li>기업 재무현황과 성장 가능성 등 기업의 사업화 역량</li> </ul>	3	0 1 2 3 4 5 └───┬───┬───┬───┬───┘	
평가총점(A×B의 합계, 60점 만점) :				점

#### 5. 연구과제 후속지원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 6. 후속지원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7.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